

울산지방법원 2018. 8. 21 선고 2018가단56024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]

전 문

원고1. A

2. B

피고1. C

2. D

변론 종결2018. 7. 24.

판결 선고2018. 8. 21.

주 문

1. 원고들에게,

가. 피고 C은 별지 순번 1 기재 부동산 중 각 1/2 지분에 관하여 2017. 5. 30.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
접수 제27004호로 마친,

나. 피고 D은 별지 순번 2 기재 부동산 중 각 1/2 지분에 관하여 2017. 7. 17. 대구지방법원
경주지원 접수 제36477호로 마친, 별지 순번 3. 부동산 중 각 1/2 지분에 관하여 2017. 7. 17.
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접수 제36479호로 마친

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김용두

별지